

고용연령차별금지법

(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ct)

고용연령차별금지법은 40세 이상의 자에 대한 고용차별을 금지한 법으로 1967년에 제정되어 1986년과 1991년에 고령근로자복지혜택보호법 및 시민권리법에 의하여 개정되었다. 이 법은 사용자가 제공하는 연금 및 급부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대중에게 고령근로자의 고용필요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.

고용연령차별금지법은 고령근로자가 해고되었을 때 재고용되는 과정에서 특별히 불이익을 당하거나 업무수행의 능력과는 상관없는 임의의 연령제한이 일반적인 관행이며 장기실업률이 젊은 근로자층에 비하여 고령 근로자층에서 높고 그 인원수가 많거나 증가하고 있으며 통상에 영향을 미치는 산업에서 연령으로 인한 고용상 임의적 차별의 존재가 통상 및 통상에서 재화의 자유로운 흐름에 방해가 되는 경우에 적용된다. 이 법의 목적은 고령자의 연령 이외의 능력에 근거한 고용의 촉진, 고용상 임의적 연령차별의 금지, 고용상 연령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사용자와 근로자가 찾도록 지원하는 것이다. 권리를 침해당한 자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법적 또는 형평법상 구제를 위하여 관할법원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. 다만, 소송을 제기하는 자의 권리는 이 법에 의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평등고용기회위원회에 의한 소송의 개시 시점에 소멸되어야 한다.

고용연령차별금지법은 제1조. 명칭 제2조. 의회의 확인 및 목적표명서 제3조. 교육 및 연구프로그램, 의회에 대한 권고 제4조. 연령차별금지 제5조. 노동장관의 연구, 대통령과 의회에 대한 보고, 연구영역, 연구이행, 보고서의 제출일 제6조. 행정 제7조. 기록보존, 조사 및 집행 제8조. 공고되어야 할 통지 제9조. 규칙 및 규정, 예외 제10조. 형사벌 제11조. 정의 제12조. 연령 제한 제13조. [삭 제] 제14조. 연방과 주의 관계 제15조. 연방정부고용상 연령으로 인한 차별금지 제16조. 시행일 제17조. 지출의 권한으로 구성되어 있다.